

**導 船 約 款**  
(導船法 第36條 및 導船法施行規則 第30條 關聯)



# 도 선 약 관

## 第 1 章 總 則

第 1 條(約款의 適用) ①○○港 導船區의 導船約款에 關하여는 이 約款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이 約款에 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法令 또는 慣習에 依한다.

第 2 條(導船士의 地位) ①導船士는 船舶의 交通安全과 運航能率의 向上에 寄與하며 船長의 助言者의 資格으로 導船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船長의 安全運航에 對한 權限과 責任은 導船士의 乘船에 依하여 變更되지 아니한다.

## 第 2 章 導船의 引受

第 3 條(導船의 要請) 導船을 要請코자 하는 者는 導船開始 豫定時刻로부터 ○時間前까지 要請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4 條(要請方法) ①導船을 要請하고자 하는 者는 書面, 口頭, 電信, 電話 또는 信號等 方法으로 正確하게 當該 導船區의 支會에 要請하여야 한다.

②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導船의 要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導船對象 船舶

의 船名, 總屯數, 吃水, 船舶의 全長 및 全幅, 貨物名, 導船開始豫定時刻, 導船區間, 檢疫與否 其他 必要한 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船舶이 特殊한 狀態인 境遇에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迅速하게 그 狀況을 通知하여야 한다.

④導船을 要請한 者가 導船要請 內容을 變更 또는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導船士가 導船을 하기 爲하여 支會를 出發하기 前까지 通報하여야 한다.

第 5 條(導船의 制限) 導船士는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境遇에는 導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船舶의 堪航能力이 不充分할 때
2. 氣象 本船의 狀態, 積荷의 種類 또는 水路等의 狀況을 參酌하여 運航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
3. 導船船의 航行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
4. 導船士의 乘下船에 對한 安全施設이 不備할 때
5. 導船士의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生命 및 身體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
6. 船舶의 出入港 또는 港內移動에 關하여 地方海洋水產廳長의 許可가 없을 때.
7. 其他 不得已한 理由가 있을 때.

第 6 條(出港中止要請) 導船士는 船舶所有者 또는 其 代理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導船料를 支拂하지 아니할 때에는 管轄地方海洋水產廳長에게 當該船舶 또는 其 船舶所有者가 所有하는 다른 船舶의 出港中止를 要請할 수 있다.

第7條(大型船等の導船) 支會는 船舶運航의 安全을 期하기 爲하여 總屯數 3萬 屯 以上の 大型船 또는 特殊한 船舶을 導船하는 境遇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와 協議하여 2人以上の 導船士가 同時に 乘船하여 導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油槽船, LNG船, LPG船등 危險物(海洋汚染防止法 第2條 第1號에서 定한 기름 包含)을 積載한 船舶에 對하여는 반드시 2人以上の 導船士를 乘船하여야 하며, 自家 接岸施設(浮漂)을 갖춘 船舶의 所有者가 船舶繫留補助人(Mooring Master)을 乘船하여 導船士를 補佐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運營 91 572-657(95. 12. 30)에 依據 變更認可)

### 第 3 章 導 船

第8條(乘下船의 安全措置) ①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船에서 本船에 乘船 또는 下船할 때 風下舷側을 만들어 本船의 速度를 줄이거나 機關을 停止하는 等 導船士 및 導船船의 安全을 爲한 諸般安全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導船士用 사다리를 安全하고 清潔하게 維持하여야 하며 導船船에 適合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③船長은 恒常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具備하여야 한다.

④船長은 夜間에는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下船할 수 있도록 充分한 照明을 하여야 한다.

第9條(船長의 資料通報) 船長은 導船士가 乘船하였을 때에는 當該船舶의 總屯數, 吃水, 全長, 機關의 種類, 速力, 航海計器의 現狀 및 操舵의 不良 其他

必要한 事項을 導船士에게 알려야 한다.

第10條(船長의 協力義務) ①船長은 乘務員이 導船士의 操船上 助言을 迅速 正確하게 實行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恒常 監督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乘務員으로 하여금 港內 및 水路를 잘 살피도록하여 異狀이 發見 되면 即時 導船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船長은 恒常 本船의 機關 및 錨를 使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導船士가 그 業務를 安全하게 遂行하는데 必要한 曳船等を 要請할 때에는 協力하여야 한다.

第11條(船長의 便宜提供) ①船長은 導船士가 導船을 하기 爲하여 本船에 乘船時 休養施設 其他 必要한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導船士가 導船修習生을 帶同하는 境遇에도 導船士와 同等하게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12條(導船士의 強制同行禁止) 船長은 正當한 事由없이 導船士를 當該 導船區 밖으로 強制同行하지 못한다. 다만 氣象惡化等 不可避한 事由로 當該 導船區 밖으로 同行하는 때에는 當該支會에 그 事實을 迅速히 通報하여야 하며 이 境遇 導船士에게 適切한 便宜와 支會까지의 歸航에 所要되는 一切의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 第 4 章 導 船 料 等

第13條(導船證明書) 船長은 導船士가 그 業務를 終了하였을 때에는 導船士

가 提示하는 導船證明書에 所定事項을 記入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第14條(導船料 等) 導船料 및 導船船料는 導船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第 5 章 補 償

第15條(損害賠償等) ①導船士, 導船修習生, 導船船船員이나 그 家族 및 支會는 本船側의 歸責事由에 依하여 導船船 其他 物件이나 生命, 身體와 所持品에 損害를 입은 境遇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한 후 檢疫등 船舶의 歸責事由로 因하여 船內 또는 檢疫所等に 收容되었을 境遇,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6條(免責) ①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導船士에게 導船을시켰을 境遇에 導船士의 業務上 過失로 因하여 當該船舶, 船長, 船員 또는 第三者에게 입힌 損害에 對하여는 導船士에게 責任을 묻지 아니한다. 이 境遇에 導船士는 當該 船舶으로부터 支拂받아야 할 導船料 및 導船船料의 全額을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請求할 수 없다.

②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導船士의 業務上 過失에 起因한 責任에 對하여 第三者가 直接 導船士에 對하여 提起한 訴訟 其他 請求의 結果 發生한 導船士의 第三者에 對한 債務中 當該 船舶에 關하여 導船士에게 支拂되거나 또는 支拂되어야 할 導船料의 全額을 超過하는 部分에 對하여는 導船士에

게 이를 補償한다. 단,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스스로 第三者에게 賠償하여야 할 境遇에 法令에 依하여 船舶所有者의 第三者에 對한 賠償責任을 制限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 補償金의 額을 그 制限의 範圍內(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直接 第三者에게 賠償으로서 支拂한 金額이 있는 境遇에는 그 것을 控除한 額의 範圍內)로 制限할 수 있다.

③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은 導船士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起因한 責任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導 船 區

[별표 1]

導船區	仁川, 釜山, 麗水, 蔚山, 大山, 平澤唐津, 馬山, 浦項, 群山, 木浦, 東海
-----	--

#### 導 船 要 請 時 間

[별표 1]

導 船 區	導 船 要 請 時 間
仁 川	6
釜 山	3
麗 水	5
蔚 山	3
大 山	6
平 澤·唐 津	6
馬 山	6
浦 項	3
群 山	6
東 海	3
木 浦	6

附 則

1. 1980. 7. 16 海運港灣廳 認可
2. 改正 1988. 6. 8(運營 33772-3494)
3. 改正 1995. 12. 20(運營 91572-657)
4. 1999. 5. 3 韓國導船士協會 總會, 導船士一同 決議
5. 1999. 5. 1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협의결정
6. 2009. 4.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